



제 418국회 (정 기 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등〉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0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조문 인용오류 수정	3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6
3.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 출국 관련 신고 대상 확대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

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조문 인용오류 수정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 보존·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용조문의 ‘제49조제1항제4호’ 부분을 ‘제49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u>제49조제1항제4호</u>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 ----- ----- ----- ----- ----- ----- ----- <u>제49조제1항제3호</u> ----- ----- ----- -----

현행	개정안
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생략)	----- ----- ----- -----.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제49조제1항제3호----- ----- 4. (현행과 같음)

□ 종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가 개정되어(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같은항제3호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 · 후 비교 >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생략) 1. ~ 2. (생략)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u>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생략) 1. ~ 2. (생략) 3. <u>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청소년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원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⑥ ~ ⑧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 ⑥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5조제1항1)은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최단 10년,

1)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최장 30년)을 차등화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제5항²⁾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의 유형을 ‘등록대상자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 및 동 기간 이전·이후의 기간으로서 동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법원이 판결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공개대상자가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로 인하여 공개기간에 이어진 전·후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2)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에 대하여 수용 기간 이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로 장기 출국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어 실질적인 공개기간이 짧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⁴⁾, 개정안은 청소년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05)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② (생략)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제4항 각 호의 기간
<신설>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그 수용되는 기간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

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심사경과와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④ ~ ⑦ (생략)	<u>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출국 관련 신고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국외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u>6개월</u>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 <u>1주일</u> ----- ----- -----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u>6개월</u>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 ----- ----- -----. ----- ----- <u>1주일</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자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⁵⁾ 국외 체류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⁶⁾를 부과하고 있음.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함으로써 성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고,⁷⁾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⁸⁾.

5) 현행법에서 국외 출국 시 등록대상자의 신고의무를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한정된 취지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이를 거주지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7항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는 3개월마다, 20년 또는 15년인 경우는 6개월마다, 10년인 경우는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함(법무부 제출의견).

6)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785 결정

8)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수사의 효율성과 재범 방지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재를 즉시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 출국 시 신고의무 대상으로서의 체류 기간을 감축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할 때에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⁹⁾, 등록대상자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성, 등록대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인정 범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 ⑤ (생략)